

유,무선 중계기국의 개설 및 운용 규정

(본 규정은 연맹 무선국관리규정에 따른다)

제 1 조 (유,무선 중계기의 주 서버 운용 및 관리 주체)

- ① 유,무선 중계기(이하 중계기)는 무선통신중계기로 기존 연맹의 무선국관리규정 및 유,무선 중계기국 서버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.
- ② 중계기의 주 서버는 연맹에 두고 운용 관리하며 기술적인 사항은 중계기위원회의 위원장 혹은 별도로 임명된 책임자(유무선 중계기 서버 관리자)가 관리한다.
- ③ 연맹의 중앙 메인서버 (HL0HQ-R)에 각 본부(정회원 300명 이상) 및 지부(정회원 30명 이상)의 모든 서버가 연결되어야 하며 그 밖의 난청지역은 관할 구역에서 지정 중계기국을 설치 운용 할 수 있으며 난청 지역이라도 연속 1년 이상 정회원이 10명 이하일 경우 개설할 수 없다.
- ④ 모든 중계기의 인허가는 연맹 중계기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연맹에서 허가 신청하며 각 지역의 본부 및 지부에 1국을 개설하되 제1장 제3조의 규정에 난청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중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 할 수 있으나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.
- ⑤ 중계기의 사용은 아마추어무선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하되 긴급통신 이상의 통신 및 훈련 통신은 예외로 한다.
- ⑥ 중계기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연맹 자율지도위원은 수시로 중계기의 이용실태를 파악 지도하며 심각한 위반 사항을 인지하였을 시는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연맹으로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전파관리소로 서면보고 한다.
- ⑦ 각 지역본부 및 지부(서버)는 모두 HL0HQ-R(Repeater)로 접속 운용한다.

제 2 조 (유,무선 중계기의 기술적 기준)

- ① 아마추어무선 중계기는 전파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연맹에서만 개설 할 수 있으며, 합법적으로 개설된 아마추어무선국이라도 허가된 무선통신기기에 유,무선 통신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개인적으로 연결할 경우 무단 중계기 개설 행위에 해당된다. 단 유저국(개인의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통신과 연결)은 무선국이 아닌 것으로 정의한다.
- ② 중계기 서버의 유,무선 접속 기술기준은 연맹의 유,무선 중계기국 서버운용 시행세칙에 따라 접속 되어야 하며 연맹

서버를 거치지 않고 각 지역본부내의 서버는 외국의 서버에 연결할 수 없다.

- ③ 사용 서버(PC)는 일정 기준 이상 기능의 PC로 하며 인터넷 회선은 일정 기준 안정적인 회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낙뢰 등 순간 서지 전압에 견디도록 포설된 회선이어야 한다.
- ④ 사용 전원은 차단되는 일이 없어야 되며 전원 복원과 동시에 자동 인터넷 회선 접속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춘 서버(PC)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⑤ 중계기위원회는 연맹에서 정한 기술기준을 수시로 서버 관리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본부 및 지부의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 3 조 (무선설비 및 부속 설비에 관한 규정)

- ① 서버 등 시설물의 고장 시 예비서버를 상시 비치하여 교체 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② 각 지역에 설치 중계기(무선기)는 주 장치와 예비기기를 두며 연맹에서 규정한 아마추어무선기기로 한다.
- ③ 사용 전원은 주 전원과 예비 전원을 갖추어야 한다.
- ④ 중계기에 사용되는 모든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연맹 무선국관리규정 및 칼 밴드 플랜(KARL BAND-PLAN)규정과 유,무선 중계기국 서버 운용 시행세칙에 따른다.
- ⑤ 무선설비의 설치는 각 지역본부 및 지부에서 하고 연맹의 중계기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한다.
- ⑥ 사용 인터넷은 각 지역의 본부 및 지부의 것을 사용하며 인터넷 회선이 없는 곳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⑦ 각 지역본부 및 지부의 유,무선 중계기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아마추어무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즉시 설치한다.
- ⑧ 사정상 본부 및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중계기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그 사유를 연맹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본부 및 지부에는 연맹(이사장)이 직권으로 설치장소와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된 자는 본부관할 책임자가 된다.

제 4 조 (유지관리 및 기술지원)

- ① 시설유지보수는 연맹의 각 지역 중계기위원회 위원과 본부 및 지부가 공동으로 한다.
- ② 중계기의 시설자(이사장)는 원만한 유지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중계기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③ 각 지역별 관리자는 수시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지역 본부장에게 보고하며, 본부장은 관리감독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운용실태를 매월 1회 연맹으로 보고한다.
- ④ 중계기의 신청은 각 지역 본부장이 연맹으로 하며 무선국관리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- ①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연맹 무선국관리규정 및 세칙에 따른다.
- ② 본 규정은 연맹 이사회를 통과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- ③ 본 규정은 2012.11. 신설
- ④ 2013. 12. 13. 중계기/기술정책위원회를 통신기술위원회로 명칭 변경.
- ⑤ 2015. 09. 12. 제1조 제1, 2항, 제2조 제2항, 제3조 제4, 7항, 개정 및 제1조 제7항 신설.
- ⑥ 2017. 05. 13. 통신기술위원회를 중계기위원회로 명칭 변경.